

비정년트랙전임교원 임용지침

제1조 (목적) 이 지침은 교원인사규정 제2조 제2항에 의한 비정년트랙전임교원(이하 “교원”이라 한다)의 자격, 계약 및 처우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09.3.1.>

제2조 (교원의 종류)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교육전담교수(교과담당과 비교과 담당으로 구분하며, 이 지침에서는 비교과 담당 만 괄호 안에 표기하여 구분한다), 강의전담교수, 실습전담교수, 연구교수, 연어민 교수 및 산학협력중점교수로 구분한다.<신설 2018.04.15.>

- ① 교육전담교수 : 강의와 학생지도를 담당한다.<개정 2007.9.20, 2010.10.12., 2012.12.18.>
- ② 강의전담교수 : 강의와 학생지도를 전담한다.<개정 2010.10.12.>
- ③ 실습전담교수 : 강의와 학생지도, 실습지도를 전담한다.<개정 2011.11.1.>
- ④ 연구교수 : 대학 또는 대학부설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전담한다.<개정 2010.10.12., 2014.2.28.>
- ⑤ 원어민교수 : 외국어분야의 교육을 목적으로 임용된 외국어가 모국어인 교원<개정 2012.12.18.>
- ⑥ 산학협력중점교수: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, 연구, 창업, 취업 지원활동을 중점 추진하고,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임용되고 평가받는 교원<신설 2016.10.20.>
- ⑦ 교육전담교수(비교과 담당): 교육과 비교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용되고 그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 받는 교원 <신설 2019.02.28., 개정 2019.04.15.>
- ⑧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대외적으로 ‘비정년트랙’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<개정 2019.02.28.>

제3조 (자격 및 임용절차) ① 교원은 교원인사규정 제12조 제2항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 단, 원어민교수의 경우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다.<개정 2009.3.1., 2018.10.31.>

- ② 강의전담교수는 해당 분야의 학문성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한다.<신설 2010.10.12.>
- ③ 실습전담교수는 해당 분야의 학문성과 현장전문성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한다.<신설 2011.11.1.>
- ④ 연구교수는 대학과 대학의 연구소 등에서 외부기관(단체 및 개인)으로부터 지원되는 연구비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연구비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임용 계약이 만료된다. <개정 2013.2.18., 2014.2.21., 2017.8.16.>
- ⑤ 산학협력중점교수는 해당분야의 산업체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중에서 선임한다.<신설 2016.10.20.>
- ⑥ 교원의 신규임용은 전임교원 신규임용 절차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공개강의는 실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4조 (근무) ① 교육전담교수의 주당 수업책임시수는 12시간(현장실습 1학점 포함)으로 하며 책임시간 외의 강의시간에 대하여는 초과강의료를 지급한다.<개정 2010.10.12., 2015.2.28>

② 강의전담 교수의 경우 주당 수업책임시수는 12시간으로 하며, 책임시간 외의 강의시간에 대하여는 초과 강의료를 지급한다.<개정 2007.9.20, 2009.3.1., 2009.9.1., 2010.10.12., 2011.3.1., 2011.11.1., 2013.9.1>

③ 실습전담교수의 주당 수업책임시수는 12시간(현장실습 1학점 포함)으로 하며, 책임시간 외의 강의시간에 대하여는 초과강의료를 지급한다.<신설 2011.11.1., 개정 2016.9.2>

④ 연구교수는 주 4일 근무일을 정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근무하면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되 총장의 허락을 받아 탄력근무 할 수 있다. 강의는 총장의 허락을 받아 주당 6시간까지 강의할 수 있으며, 그 강의시간은 기본연봉에 포함된다. 단,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아 임용된 경우 강의에 대한 초과강의료를 지급한다.<개정 2010.10.12., 2014.2.21., 2014.2.28., 2019.02.28., 2019.04.15.>

⑤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주 4일 근무일을 정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근무하되 총장의 허락을 받아 탄력근무 할 수 있다. 강의는 총장의 허락을 받아 주당 6시간까지 강의할 수 있으며, 그 강의시간은 기본연봉에 포함된다.<신설 2016.10.20., 개정 2019.02.28.>

⑥ 교육전담교수(비교과 담당)는 주 4일 근무일을 정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근무하되 총장의 허락을 받아 탄력근무 할 수 있다. 강의는 총장의 허락을 받아 주당 6시간까지 강의할 수 있으며, 그 강의시간은 기본연봉에 포함된다.<개정 2019.04.15.>

⑦ 교원은 총장의 허가를 득한 후 외부 출강할 수 있다.<개정 2019.02.28.>

⑧ 교원은 학과(부)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학과 및 학부 교수회의에 참석해야 한다.<개정 2010.10.12., 2019.02.28., 2019.04.15.>

⑨ 교원은 총장의 요청에 의해 대학업무를 담당 할 수 있다. <신설 2018.10.31., 개정 2019.02.28.>

제5조 (평가 및 처우) ① 교원은 연구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.<개정 2005.9.1, 2008.4.3, 2010.10.12.>

② 교육전담교수와 실습전담교수, 강의전담교수는 교수업적평가 시행세칙의 교육, 학생지도 및 근태에 관한 평가를 받는다. 단,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학협력활동중심의 학생취업 및 창업지도등의 임무를 포함하여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 재임용 평가를 받는다.<개정 2010.10.12., 2011.1.31., 2011.11.1., 2012.12.18., 2016.10. 20.>

③ 교원의 연봉은 교원 연봉제운영에 관한 내규에 준하여 총장이 정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한다.<개정 2006.5.8, 2007.3.1, 2007.9.20, 2008.3.1, 2009.3.1.>

④ 외국인교수의 경우 연구 및 교육경력과 기타사항을 고려하여 총장이 임용직급 및 연봉, 연봉외 급여를 정할 수 있다.<신설 2008.3.1>

⑤ 원어민교원의 경우 주택 또는 주택보조비를 총장의 결재로 지원할 수 있다.<신설

2007.9.20, 개정 2008.3.1>

- ⑥ 삭제 <2019.04.15.> <신설 2010.10.12., 개정 2011.9.21., 2011.11.1.>
- ⑦ 연구교수의 연봉은 연구 프로젝트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총장이 따로 정한다.<신설 2011.3.1., 개정 2014.2.28.>
- ⑧ 연구교수와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본 대학 전임교원에게 지원하는 교내학술연구비를 지원하지 않는다.<신설 2017.8.16.>

제6조 (재계약) ① 교육전담교수의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하고, 재계약 심사 후 연장할 수 있으나 재임용 되지 않을 경우 임용기간 만료로 당연 퇴직한다. 재계약 심사 요건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0.10.12., 2012.12.18.,2015.2.28.>

1) 연구평가

인문사회계: 교수업적평가 연구점수를 기준하여 600점 이상(단, 등재(후보)지 게재) <개정 2016.10.20. 2019.02.28.>

예능계: 비중 있는 독주회 2회 이상

(실용음악과는 연주를 위한 공중과 방송출연 4회 이상으로 대체가능)

- 2) 업적평가 : 교수업적평가 교육 영역 기준 점수의 80% 이상 취득, 봉사영역 3-1-4 예배의 경우 50% 이상 참석 <개정 2014.2.21., 2019.02.28.>
- 3) 근태평가 : [별표1-1]의 근태평가표로 평가하여 75점 이상 취득 <개정 2019.02.28.>

② 강의전담교수의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하고, 재계약 심사 후 연장할 수 있으나 재임용 되지 않을 경우 임용기간 만료로 당연 퇴직한다. 재계약 심사 요건은 다음과 같다. <신설 2011.11.1.,2012.12.18.,2015.2.28.>

1) 연구평가

인문사회계: 교수업적평가 연구점수를 기준하여 600점 이상(단, 등재(후보)지 게재)<개정 2016.10.20., 2019.02.28.>

예능계: 비중 있는 독주회 2회 이상

(실용음악과는 연주를 위한 공중과 방송출연 4회 이상으로 대체가능)

- 2) 업적평가 : 교수업적평가 교육 영역 기준 점수의 80% 이상 취득, 봉사영역 3-1-4 예배의 경우 50%이상 참석 <개정 2014.2.21., 2019.02.28.>
- 3) 근태평가 : [별표1-1]의 근태평가표로 평가하여 75점 이상 취득<개정 2019.02.28.>

③ 실습전담교수의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하고, 재계약 심사 후 연장할 수 있으나 재임용 되지 않을 경우 임용기간 만료로 당연 퇴직한다. 재계약 심사 요건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0.10.12.,2011.11.1.,2012.12.18.,2015.2.28.>

1) 연구평가

인문계: 교수업적평가 연구점수 기준 300점 이상 및 실습지도 연구보고서(1년 기준)

예능계: 비중 있는 독주회 2회 이상 및 실습지도 연구보고서

(실용음악과는 연주를 위한 공중과 방송출연 4회 이상으로 대체가능)

- 2) 업적평가 : 교수업적평가 교육 영역 기준 점수의 80% 이상 취득, 봉사영역

- 3-1-4 예배의 경우 50% 이상 참석<개정 2019.02.28.>
- 3) 근태평가 : [별표1-1]의 근태평가표로 평가하여 75점 이상 취득 <개정 2019.02.28.>
- ④ 연구교수의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하고, 재계약 심사 후 연장할 수 있으며,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당연 퇴직한다. 단, 연구비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임용계약이 만료된다. <개정 2010.10.12.,2012.12.18.,2014.2.21.,2014.2.28.>
- 1) 연구평가
인문사회계: [별표 4]의 기준에 따른다.<신설 2016.10.20., 개정 2019.02.28.>
- 2) 근태평가 : [별표1-1]의 근태평가표로 평가하여 75점 이상 취득, 봉사영역 3-1-4 예배의 경우 50% 이상 참석<개정2019.02.28.>
- ⑤ 원어민교수의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하고, 재계약 심사 후 연장할 수 있으나 재임용 되지 않을 경우 임용기간 만료로 당연 퇴직한다. 재계약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.
- 1) 업적평가 : 교수업적평가 교육 영역 기준 점수의 80% 이상 취득, 봉사영역 3-1-4 예배의 경우 60% 이상 참석 <개정 2014.2.21.>
- 2) 근태평가 : [별표1-2]의 근태평가표로 평가하여 75점 이상일 경우 합격으로 한다.<개정 2010.10.12., 2011.11.1., 2012.12.18., 2019.02.28.>
- ⑥ 삭 제 <2011.1.28.>
- ⑦ 삭 제 <개정 2010.10.12., 2014.2.21.>
- ⑧ 산학협력중점교수의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하고, 재계약 심사 후 연장할 수 있으나 재임용 되지 않을 경우 임용기간 만료로 당연 퇴직한다. 재계약 심사 요건은 다음과 같다.<신설 2016.10.20.>
- 1) 연구평가
[별표 3]의 기준에 따른다.<개정 2019.02.28.>
- 2) 업적평가 : 봉사영역 3-1-4 예배의 경우 50% 이상 참석<개정 2019.02.28.>
- 3) 근태평가 : [별표1-1]의 근태평가표로 평가하여 75점 이상 취득<개정 2019.02.28.>
- ⑨ 교육전담교수(비교과 담당)의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하고, 재계약 심사 후 연장할 수 있으나 재계약 되지 않을 경우 임용기간 만료로 당연 퇴직한다. 재계약 심사 요건은 다음과 같다.<개정 2019.04.15.>
- 1) 교육평가
[별표 3]의 기준에 따른다.
- 2) 업적평가 : 봉사영역 3-1-4 예배의 경우 50% 이상 참석
- 3) 근태평가 : [별표1-1]의 근태평가표로 평가하여 75점 이상 취득
[신설 2019.02.28.]

제7조 삭제 [본조신설 2010.12.11., 개정 2011.9.21., 2014.2.21.]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지침은 2005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지침의 개정) 이 지침은 기획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으로 개정한다.<개정 2007.9.20>

부 칙

- ① 이 지침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이 지침은 2006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이 지침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지침은 2007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. 단, 원어민교원에 한하여 2007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지침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지침은 2008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지침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변경지침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변경 지침은 2010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제6조 ④항은 2011년 3월 1일 임용된 자부터 적용한다.

- ③ (경과조치) 이 법의 시행일 현재 재직중인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이 법에 의해 교육전담교수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변경 지침은 201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변경 지침은 2011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변경 지침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변경지침은 2011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변경지침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변경지침은 2012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변경 지침은 2013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변경 지침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변경 지침은 2014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변경 지침은 2014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② (경과조치) 2014.1.1.이전에 임용된 비정년트랙(교육전담)의 정년전환은 임용당시 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변경 지침은 201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하며, 2015년 3월 1일 재임용 및 신규 계약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변경 지침은 2016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변경 지침은 201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변경 지침은 2017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변경 지침은 2018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변경 지침은 2019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변경 지침은 2019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 단, 제4조 제4항은 2019학년도부터 적용한다.

비정년트랙 전임교원 근태평가조서

피평정자	소속 : 직위 : 성명 :	확 인 자	위원장 : (인)								
구분	평 정 향 목					평 가					
평정영역						수	우	미	양	가	
공통	1.교수의 인성과 신앙 (30)	①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도					5	4	3	2	1
		② 교수 능력 및 그 열의					5	4	3	2	1
		③ 학교행사 참여					5	4	3	2	1
		④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					5	4	3	2	1
		⑤ 신앙 및 교회생활의 적극성					5	4	3	2	1
		⑥ 동료교원과의 융화력					5	4	3	2	1
	2.교수의 적성 및 역량 (56)	① 복무 규정 준수					10	8	6	4	2
		② 계약사항 및 관련 규정 준수					10	8	6	4	2
		③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준수					6	5	4	3	2
		④ 학술단체 참여도					6	5	4	3	2
		⑤ 학술활동의 전문성 향상 노력					6	5	4	3	2
		⑥ 연구활동에 대한 미래발전가능성					6	5	4	3	2
		⑦ 교수법 세미나 참여					6	5	4	3	2
		⑧ 대학발전을 위한 적극적 노력 정도					6	5	4	3	2
교육강의·실습 전담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교육전담교수(비교과 담당) (14)	① 학생 진로/취업에 대한 기여도					7	6	5	4	3	
	② 학생 지도/상담 활동의 적극성					7	6	5	4	3	
연구교수 (14)	① 외부 연구과제 수행 실적					7	6	5	4	3	
	② 외부 연구비 유치 실적					7	6	5	4	3	
총 평											
평정자	직 명				성 명						
						(인)					

비정년트랙 전임교원 근태평가조서(원어민)

피평정자	소속 : 직위 : 성명 :	확 인 자	위원장 : (인)			
구분 평정영역	평 정 항 목	평 가				
		수	우	미	양	가
1.교수의 인성과 신앙 (40)	① 교수자질 및 품위유지(15)	15	12	9	6	3
	② 동료교수와의 인화력(15)	15	12	9	6	3
	③ 신앙 및 교회생활(10)	10	9	8	7	6
2.교수의 적성 및 역량 (60)	① 강의 역량(15)	15	12	9	6	3
	② 학생지도(15)	15	12	9	6	3
	③ 근무태도 및 대학 정책 협력(15)	15	12	9	6	3
	④ 계약사항 및 관련 규정 준수(15)	15	12	9	6	3
총 평						
평정자	직 명		성 명			(인)

[별표 2]

비정년트랙전임교원 신규임용자 및 재계약자 수업책임시간

구 분	수업책임시간수
교육전담교수	12시간 (현장실습 1학점 포함)
실습전담교수	12시간 (현장실습 1학점 포함)
강의전담교수	12시간
원어민 교원	15시간

[별 표 3] <신설 2019.2.28., 개정 2019.4.15.>

산학협력중점교수 및 교육전담교수(비교과 담당) 교육평가기준

평가영역		항목	점수		비고
공통	강의 계획서	교수업적평가 행세칙에 1-1-2 ~ 1-1-6 기준 따름	최대50점/학기		강의가 배정된 경우만 평가
	강의 평가		최대50점/학기		
	강의 평가 활용		최대20점/학기		
	성적 입력 및 정정		최대30점/학기		
	결강유무 및 15주 이상 수업여부		최대20점/학기		
경력/취업 분야	학생실습 지도	현장 입장지도	5점/건	최대 100점/연간	장기 실습지도: 4주이상의 현장실습 지도
		단기 실습지도	10점/건		
		장기 실습지도	20점/건		
		인턴십 과정 지도	10점/건		
	경연대회 입상지도	교내 경연대회 입상(학과)	5점/팀	최대 50점/연간	
		교내 경연대회 입상(대학)	10점/팀		
		전국규모 경연대회 입상	20점/팀		
	교육 프로그램 개발	교육 프로그램 개발	50점/건	최대 50점/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간 1건만 인정 - 프로그램 기안,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 - 한번 인정받은 프로그램은 중복 하여 인정하지 않음
	학생취업	학생취업 연계	20점/인	최대 100점/연간	취업 증명서 제출
		취업정보 수집	10점/건		보고서 제출
		진로 및 취업 지도	10점/건		진로 및 심리상담 종합 시스템 입력기준
		취업동아리 지도	20점/동아리		
		모의 면접 지도	10점/건		보고서 등 제출
	창업지도	학생창업지도	25점/건	최대 50점/연간	결과 보고서 제출
		학생 창업	50점/건	최대	

평가영역		항목	점수		비고
			건	100점/연간	
교육지원 분야	특강	특강(교내 각 수업)	10점/건	최대	교내 전체 학생 또는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강
		특강(교내 전체)	50점/건	100점/연간	
	학습지도	학습지도(그룹)	10점/건	최대 100점/연간	진로 및 심리상담 종합 시스템 입력기준
		학습지도(개인)	5점/건		
	교육프로그램 개발	교수(교육) 프로그램 개발	70점/건	최대 100점/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교원대상의 교육 프로그램개발 - 프로그램 기안,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 - 한번 인정받은 프로그램은 중복 하여 인정하지 않음
		학생교육 콘텐츠 개발(이러닝 포함)	50점/건	최대 100점/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본인 전공분야에 한함 - 15주 이상 수업 가능한 것에 한함 - 단독: 100%, 공동: 1/n
신앙/상담 분야	학생지도	학생 상담(생활지도)	5점/건	최대 200점/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진로 및 심리상담 종합 시스템 입력기준 - 연간보고서 필수 제출 (센터장 또는 그에 준하는 부처(서)장의 결재를 득한 것에 한함) - 대학교회는 상담일지로 대체 가능하나 부서장 결재를 득한 연간 보고서는 필수 제출
		학생상담(지도) 프로그램 개발	70점/건	최대 100점/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프로그램 기안,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 - 한번 인정받은 프로그램은 중복 하여 인정하지 않음
	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	학생상담(지도) 프로그램 운영	40점/건	최대 100점/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간보고서 필수 제출 (센터장 또는 그에 준하는 부처(서)장의 결재를 득한 것에 한함)

- 1) 피 평가자는 “경력/취업 분야”, “교육지원 분야”, “신앙/상담 분야” 중 1개의 평가 영역을 선택하여 평가를 받아야 함
- 2) 재임용기준: 매년 320점 이상(강의가 있는 경우 “공통 분야”의 기준을 포함하여 590점 이상)을 취득하여야 함

[별표 4] <신설 2019.2.28.>

연구교수 재임용 연구실적 기준

계열구분	연구실적
인문사회	연간 연구실적 인정기준
	1. 외부연구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임용 된 교원 기준 외부 연구프로젝트 발주기관의 기준에 따름 2. 외부연구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임용된 교원 외의 교원 기준 가. 연구실적 연간 8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나. 연구실적의 배점기준 1) SSCI, A&HCI, SCI 단독(1편당 90점) 2) SCIE, SCOPUS 단독(1편당 60점) 3) 한국연구재단 등재지(후보지) 단독(1편당 30점)

1. 연구논문 게재시 연구교수는 반드시 단독 저자 이어야 함 단, 연구과제(연구프로젝트)상 공동연구가 불가피 한 경우 공동연구도 인정하나 해당점수는 기준점수의 1/N(연구자수)로 계산
2. 위 기준은 연간 연구 실적이며 2년 이상의 임용기간으로 임용 된 교원의 경우에는 연간 평균 실적을 적용한다.